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12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중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14.

##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3. 10. 12. 접수 제12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D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9. 9. 9. 소외 C와 C가 E 주식회사 F(이하 ‘G조합’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한도금액) 5,9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9. 9. 9.부터 2022. 9.

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9. 9. 9.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2019. 9. 9. G조합에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식품기업운전자금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C는 2023. 9. 14.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체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24. 4. 11. C의 이 사건 대출채무 중 58,256,750원을 G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C는 2023. 10. 10. 모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3. 10. 12. 접수 제12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제출되어 있었던 점, C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23. 9. 14.부터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인 2024. 4. 11.에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C의 무자력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여부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C는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C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석범

별지